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임시회>

2015. 4. 9.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이 태 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3월 2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회계과)

3. 변경이유

○ 대구테크노폴리스 공공청사용지 매입

· 유가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공공청사용지 4필지, 3,852.7㎡를 매입하여, 인근에 대단지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급증이 예상되는 유가면사무소의 주차공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함과 아울러, 향후 행정수요 증가시 타용도 공공시설 설치용도 등으로 활용코자 함.

○ 군청 창고와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청사 내 부족한 창고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청사 남측 군유지(3필지)에 2층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은 창고, 2층은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조성코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테크노폴리스 공공청사용지 매입**

- 지 번 : 달성군 유가면 봉리 600, 600-1, 600-2, 600-3번지
- 면 적 : 3,852.7㎡
- 매입예상가액 : 1,331,315천원

○ **군청 창고와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 지 번 :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425-16, 산29-5, 산34-9번지
- 부지면적 : 2,434㎡
- 창고 및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 연면적 840㎡ (1,2층 각 420㎡)
- 주차장 조성 : 1,900㎡정도
- 사업비 금액 : 1,483,701천원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Ⅱ. 검토의견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이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바

- **대구테크노폴리스 공공청사용지 매입건은** 유가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공공청사용지 4필지, 3,852.7㎡를 매입하여, 인근 아파트단지 조성 등 인구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등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 공공시설 설치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인근 상가 입주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LH의 조성 원가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청사 내 부족한 창고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청사 남측 군유지(3필지)에 2층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은 창고, 2층은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로 활용 및 여유공간은 청소차량 등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활용계획에 대해 검토 한바

○ 문제점 및 검토의견

- 계획된 부지 3필지는 토지 모양세가 불규칙하여 활용도가 떨어지고, 진출입로가 5m라고 하나 아래쪽 부성리싸이클링(김성재) 토지와 단차가 심해 비탈면을 제외하면 실제 진출입 폭은 3~4m 정도로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별첨 1과 같이 우리군 소유 토지인 금포리 1425-16, 산29-5, 산34-9를 동서로 잇는 선상에 위치한 금포리 1425-3, 산29-3 부성리싸이클링(김성재)소유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므로 토지의 활용도와 재산가치를 상승 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그러나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조속한 신축이 요구되고 있어 인근토지와 교환추진 및 차량 진출입로 추가확보를 위해 향후 “토지 활용도 제고 방안 권고”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첨 1) 부지 검토(안) 1부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현행 조례안 1부

[별첨 1]

부지 검토(안)

군청 창고와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및 주차장 계획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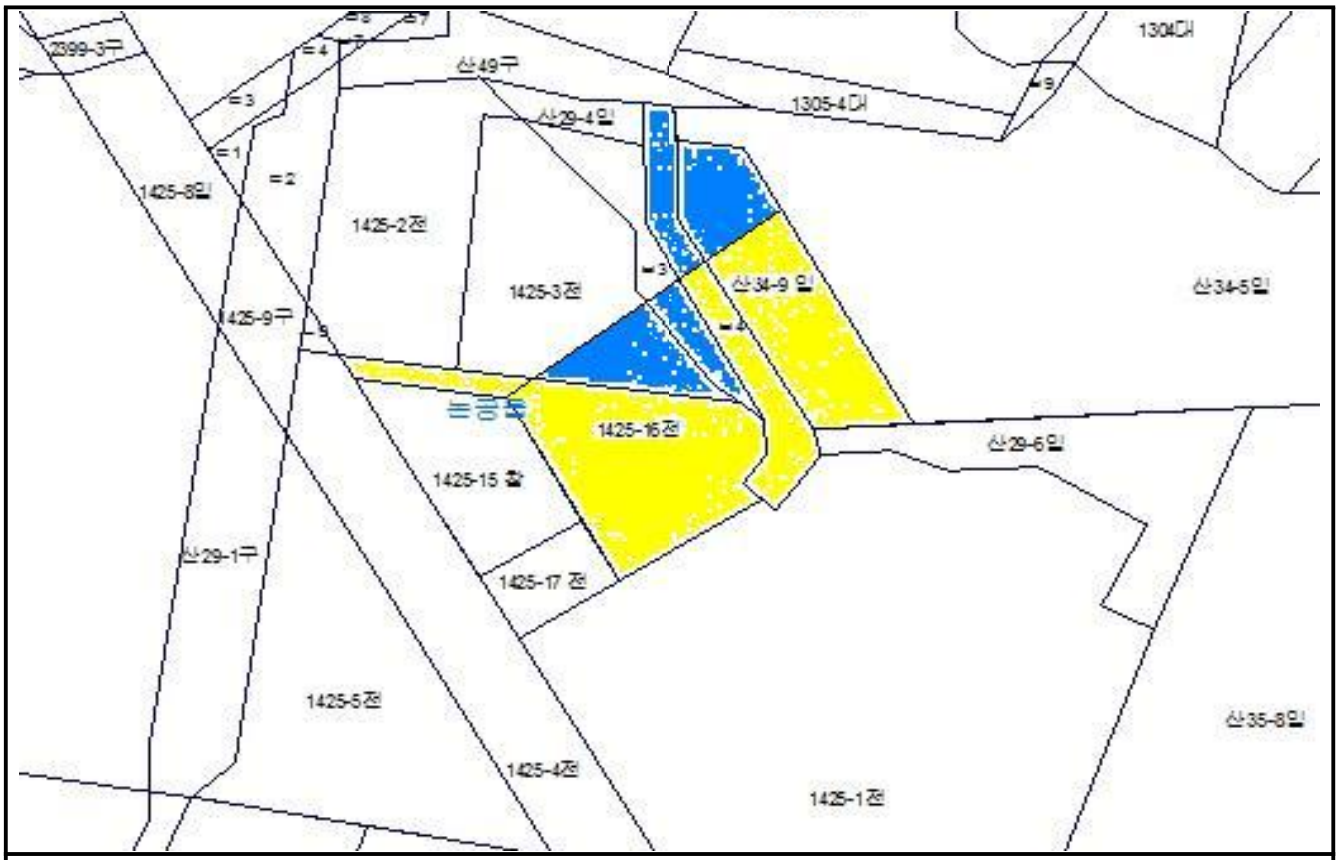

군청창고와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및 주차장 설치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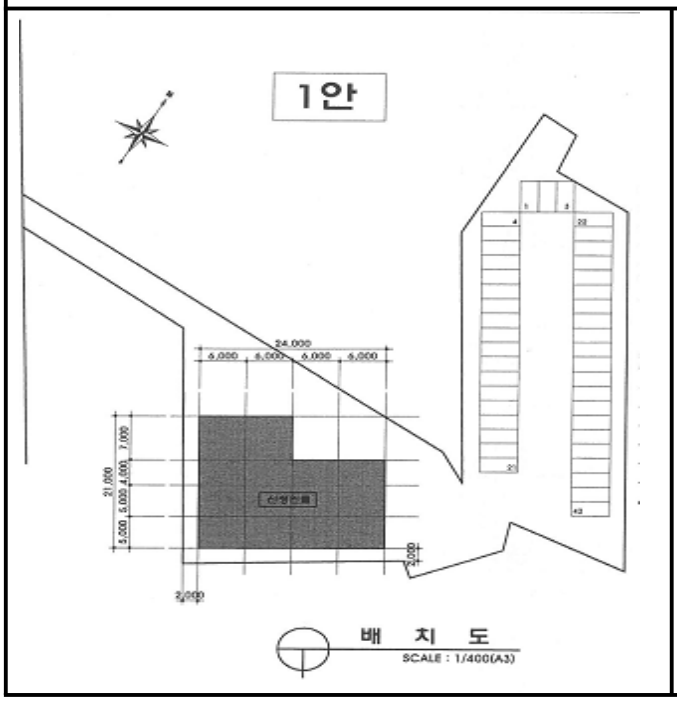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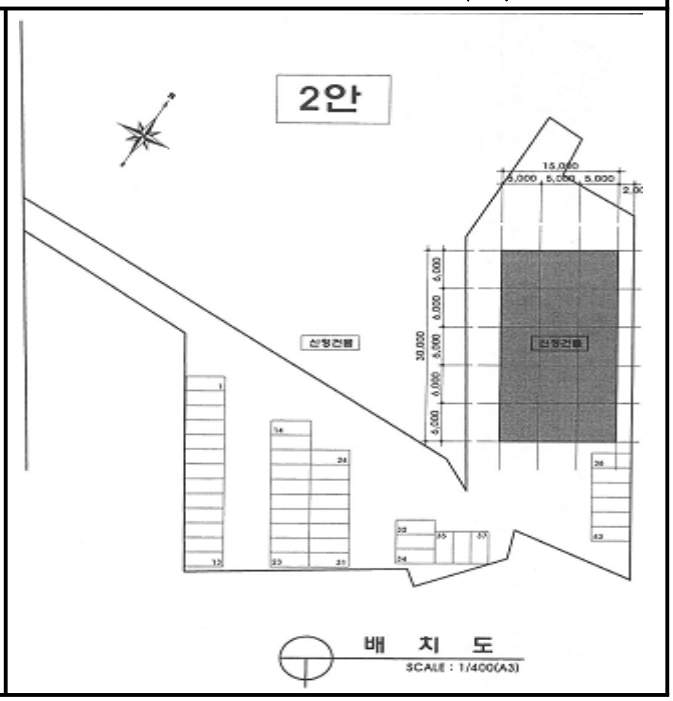

사진 및 위치도

❑ **위 치** : 달성군 유가면 봉리 600번지 등 4필지, 대지, 3,8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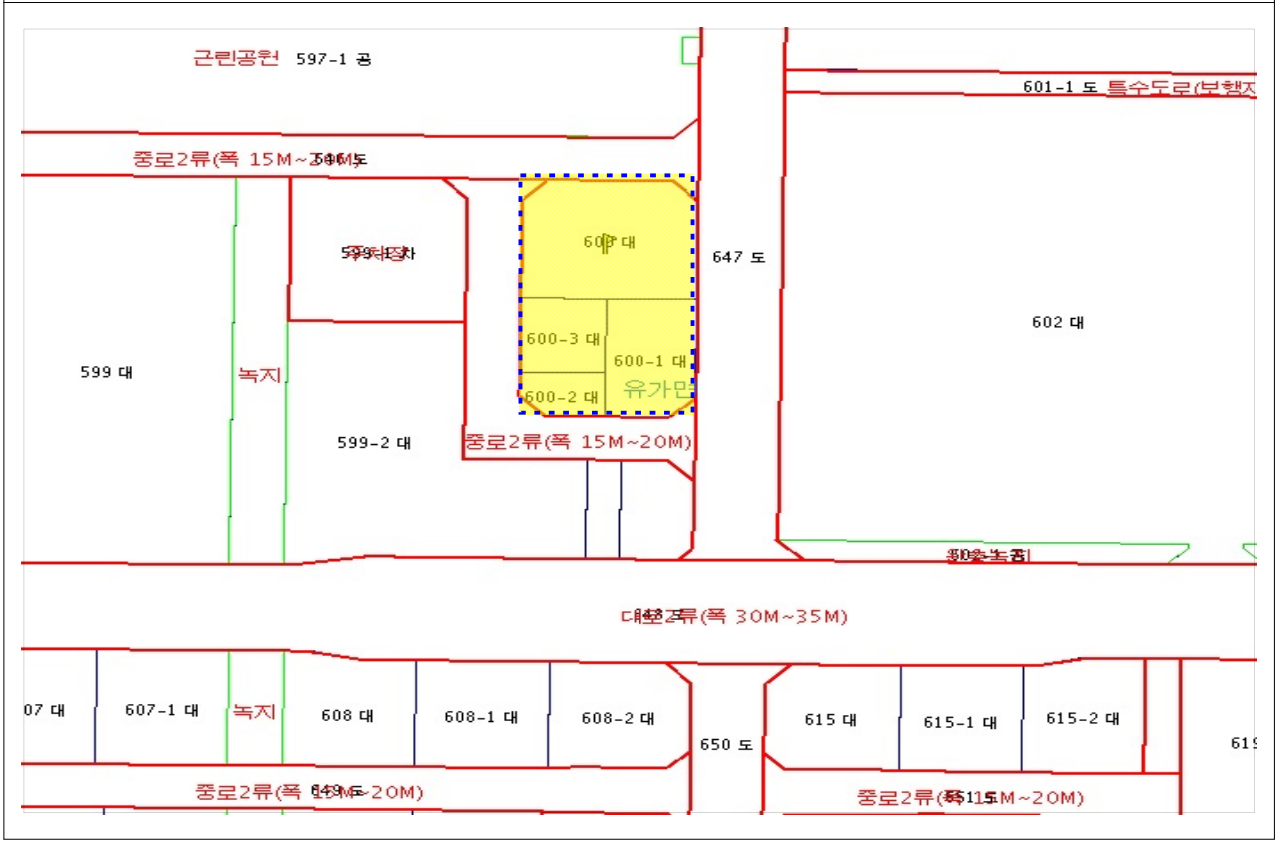

❑ 위 치 :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425-16번지 등 3필지, 전/임, 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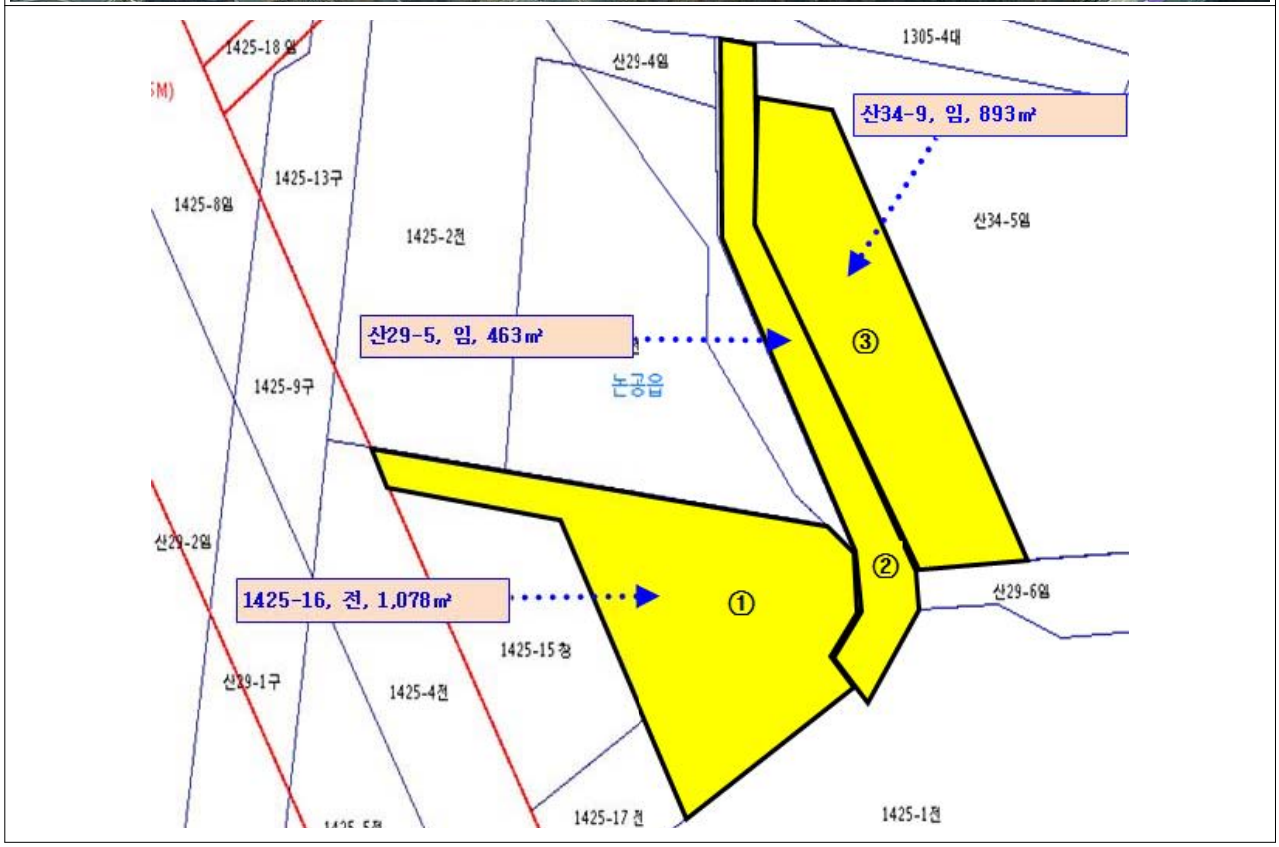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필지)	수량	금액	건수(필지)	수량	금액	건수(필지)	수량	금액
취득	계		3(4)	17,076	12,303,188	2(4)	4,692.7	2,815,017	5(8)	21,768.7	15,118,205
	1.매입	토지	1(4)	11,704	1,152,121	1(4)	3,852.7	1,331,316	2(8)	15,556.7	2,483,437
		건물	2	5,372	11,151,067				2	5,372	11,151,067
	2.교환										
	3.기타	토지									
		건물				1	840	1,483,701	1	840	1,483,701
처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체육	체육	현풍면	성하리	235-4	4,875	4,875	11,000,000,000	2016년	증개축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4. 12월 의회의결
2	답	전	유가면	용리	31-1	989	989	83,076,000	2015년	주차장 부지 매입	현풍면 현풍로6길 3-13	정재인	"
3	잡종지	잡종지	유가면	용리	31-2	5,860	5,860	1,042,494,000	"	"	북구 구암동 785 화성그랜드 파크 302동207호	성영익	"
4	잡종지	잡종지	유가면	용리	31-3	89	89	16,447,200	"	"	북구 구암동 785 화성그랜드 파크 302동207호	성영익	"
5	임야	임야	유가면	용리	산2-21	4,766	4,766	10,103,920	"	"	유가면 도의길 86	손삼출 외 2인	"
6 (건물)	잡종지	잡종지	유가면	용리	31-2, 3	497	497	151,066,740	"	매점 등	북구 구암동 785 화성그랜드 파크 302동207호	성영익	"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추 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대상수량(㎡)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대	대	유가면	봉리	600	1,926.8	1,926.8	665,813,447 (조성원가)	2015년	공공청사 및 주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한토지주택공사	공공청사 예정용지
2	대	대	유가면	봉리	600-3	595	595	205,604,630 (조성원가)	"	"	"	"	"
3	대	대	유가면	봉리	600-2	331	331	114,378,374 (조성원가)	"	"	"	"	"
4	대	대	유가면	봉리	600-1	999.9	999.9	345,519,445 (조성원가)	"	"	"	"	"
5 (건물)	전	대	논공읍	금포리	1425-16	1,078	840	1,483,701 (사업비)	2016년	창고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군유지
	임	대	논공읍	금포리	산29-5	463							
	임	대	논공읍	금포리	산34-9	893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전문개정 2014.7.7.]

□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9.5.29)

3.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8

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2010.9.30, 개정 2013. 10.30))
4.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2010.9.30)
5.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0)
6.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신설 2013.10.30)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09.5.29)
3.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개정2010.9.30)

□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3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문개정) 2006. 5. 15 조례 제1942호
(일부개정) 2008.12.30 조례 제205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9.05.29 조례 제2070호
(일부개정) 2010.09.30 조례 제2115호
(일부개정) 2011.08.01 조례 제215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5.30 조례 제2235호
(일부개정) 2013.10.30 조례 제2256호
(일부개정) 2014.10.10 조례 제229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2조(관리책임) ①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②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3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3.10.30)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9.5.29)
3.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2010.9.30, 개정 2013. 10.30))
4.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2010.9.30)
5.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0)
6.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신설 2013.10.30)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2009.5.29)
3.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개정 2010.9.3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30)

제8조 (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30)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30)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2013.10.30)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30)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0.9.30)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10.9.30)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2010.9.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0.9.30)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9.30, 개정 2013.10.30)

②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③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④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⑤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⑥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10.30)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달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조 신설 2013.10.30)

제23조(준용규정) ①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에서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30)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13.10.30)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2010.9.3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30, 개정 2014.10.10)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3.10.3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0.30)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0.30)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 재산
6. 제1호에서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 재산 (개정 2013.10.30)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

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0.30)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해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3.10.3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개정 2013.10.30)

④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⑤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 (삭제2009.5.29)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②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9.5.29, 개정 2013.10.30)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3.10.3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신설2010.9.30, 개정 2013.10.30)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신설2010.9.30)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외국인 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3.10.30)

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3.10.30)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아.「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4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3.10.30)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3.10.30)

③영 제30조제3항의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3.10.30)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3.10.3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4.10.10)

1.(삭제2009.5.29)
2.(삭제2009.5.29)
3.(삭제2009.5.29)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개시일 이전으로 한다(개정2010.9.30)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30)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9.30, 개정 2013.10.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0.3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0.30)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호 신설 2013.10.30)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0.30)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3.10.30)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13.10.30)

5.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호 신설 2013.10.30)

③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 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 차금의 잔액에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 신설 2013.10.30)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2009.5.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3.10.30)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3.10.30)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삭제2009.5.29)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와 서로 맞닿은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10.9.30)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가능하며,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단,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이어진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남은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0.9.30, 개정 2013.10.30)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3천제곱미터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5.29)(개정2010.9.30)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호 신설 2013.10.30)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호 신설 2013.10.30)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 부동산처분신탁 · 부동산개발신탁(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2010.9.30)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삭제2009.5.29)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군수는 군 · 사업소 · 읍 · 면 청사 신축시 위치 ·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 도괴위험 · 신설기관 · 임차 · 노후 · 협소 ·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 기구 · 인력의 증 · 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 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 시설로 설계
5. 냉 · 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48조(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 부군수, 국장 · 단장 및 실 · 과 · 소장 등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08.12.30, 개정 2011.8.1, 개정 2013.5.30, 개정 2013.10.30)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 : 군 수 관사
2.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3.3급 관사 : 1급에서부터 2급까지의 관사 이외의 관사 (개정 2013.10.30)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를 군수가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3.10.30)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3.10.30)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보일러 운영비(단, 1급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단, 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30)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에서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30)

제8장 보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30)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13.10.30)
2. 2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3.10.30)
3. 3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개정 2013.10.30)
4. 4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13.10.30)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조 신설 2013.10.3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 초과 할 수 없다(개정2009.5.29)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2009.5.29)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3.10.30)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2009.5.29)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재산의 합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2013.10.30)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 지침 ·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292호,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3월 23일

2. 제 출 자 : 김성택 의원(대표발의)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거짓증언에 따른 고발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거짓증언에 따른 고발절차를 구체화 함(안 제9조의6)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거짓증언에 따른 고발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김성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거짓증언에 따른 고발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9조의6)'고발의 절차'을 신설하였는데 (안 제1항)에는 고발시 의장의 명의로 고발토록 하였고, (안 제2항)에는 고발 시기는 사건발생 후 2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토록 하는 등 고발권자와 고발시기 등을 구체화 시키므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민주적인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원안통과/ 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제3조의 제목 “(조사)”를 “(행정사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군의 하부 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제5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조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를 “조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4제3항 중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출석한 자”를 “출석한 사람”으로 하고,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5제2항 중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에 의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사건 발생 후 20일 이내에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해당 위원회”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 ⑤ (생략)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_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

② (생략)	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해 지방자치단체	1. 군
2.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과 읍·면 출장소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군의 하부 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증언요구 및 선서) 의장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2(증언요구 및 선서) ----------조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에 따라----------.
제9조의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② (생 략)	제9조의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

③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 그 밖에 ---- 출석한 사람- ----------에 따라 ----------.
제9조의5(과태료 부과 징수) ① (생 략)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에 의한다. <신 설>	제9조의5(과태료 부과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의6(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사건 발생 후 20일 이내에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해당 위원회----------그 밖----------.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② (생 략)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에 따라 ----------.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에 따른----------에 따른 ----------.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4.9.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9 조례 제1409호
(일부개정) 1994. 9.30 조례 제1503호
(일부개정) 1995. 2. 8 조례 제1519호
(일부개정) 2000. 3.10 조례 제1699호
(일부개정) 2002.03.22 조례 제1788호(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2008.07.10 조례 제2022호
(일부개정) 2011.09.23 조례 제2159호
(일부개정) 2013.10.30 조례 제225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에 관 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제2조(감사) ①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2. 3. 22, 개정 2011.9.23)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당해 지방자치단체

2.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법 제117

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과 읍·면 출장소 (개정 2008. 7. 10)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2(증언요구 및 선서) 의장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8. 7. 10)

제9조의3(증인 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하며 선서서에는「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하고,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행하여야 한다.

②의장 및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의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

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10.30)

제9조의5(과태료 부과 징수) ①제9조의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5. 2. 28, 개정 2011.9.23)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에 의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조례 제2251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 제3항 중 “당해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3월 23일

2. 제 출 자 : 하용하 의원(대표발의)

3. 개정이유

○ 전국적인 전산망 확대로 출생신고 등의 민원업무가 전국에서 가능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경과로 출산축하금 과소 지급을 미연에 방지하여 민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신청인의 보호자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신청기한(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을 삭제함 (안 제5조제1항)

5.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지원내용)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군내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 유지·증진과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가 행정전산망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출생신고 등의 민원업무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 짐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우리군의 출산축하금 지원조례를 알지 못하고, 영아의 부모가 장애우인 경우 무지로 인하여 신청 기한을 실기하는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불이익을 해소코자하는 것으로

○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제4항제2호와 제4조(신청인)제2항 중 “보호자가”를 각각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로 변경 하여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 안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제1항 중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를 “출생신고 후”로 변경하므로 신청기한의 실기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등 주민의 수혜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원안통과/ 해당사항 없음.

○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 · 고령화기본법”을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위 호에서”를 “위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와 제4조제2항 중 “보호자가”를 각각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제3항2호의”를 “제3조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를 “출생신고 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 ---------- ---------- ----------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4. 위 호에서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생 략) 1. (생 략) 2. 영아 출생 후 제1호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위 각 호에서 ---------- ---------- ----------.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 ----------
제4조(신청인) ① (생 략) ② 제3조제3항2호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4조(신청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의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 출생신고 후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붙임 3)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의 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
2. 양육지원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3. 어린이 안심보험료 : 어린이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2010.12.30 조례 제2131호
(일부개정) 2011.06.10 조례 제2148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228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신생아의 부모가 함께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①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째아이 : 20만원
2. 셋째아이 이상 : 50만원

②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오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이 : 10만원
2. 둘째아이 : 70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150만원

③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한한다.) (항 신설2011.6.10)

1. 장애등급 1급, 2급, 3급 : 30만원
2. 장애등급 4급, 5급 : 20만원
3. 장애등급 6급 : 10만원
4. 위 호에서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제2조제3호의 규정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개정2011.6.10)

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영아 출생 후 제1호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제4조(신청인) ① 출산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3조제3항2호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6.10, 2014.7.10)

② 읍·면장은 신청이 있을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 제2항 대상자를 구분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3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출산축하금을 환수 후 환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8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1.6.10, 2014.7.10)

부칙(조례 제2283호,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의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의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3월 2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3.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달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달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그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나. 위원회 통합 운영(안 제2조)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투자심시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위원회 통합 운영

다. 위원회 구성 등(안 제3조)

-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3조)
-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당연직 위원 :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5.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 개정(2014.5.28)에 따라 신설되어야 할 달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달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그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개정 2014.5.28>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개정 2014.5.28>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토록 한 규정에 따라 동 조제3항<개정 2014.5.28>에는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과 동 위원회 구성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근거에 따라 “달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달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안 제2조)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 유사, 중복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따른 경제성과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 이에 따른 제명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 위원회의 구성 등도 “(안 제3조)”에서와 같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 그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주적인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원안통과/ 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제3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사항을”을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재정운영”을 “지방재정 운용 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에 있어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군의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 지방재정 운용 방향----
2.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에 있어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은 군의 국장·단장 및 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군의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5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1992. 5. 6 조례 제1443호
(일부개정) 1998. 8. 31 조례 제163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2. 1. 18 조례 제1787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3. 3. 31 조례 제180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6. 5. 15 조례 제1936호
(일부개정) 2008.12.30 조례 제205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01.10 조례 제213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5.30 조례 제223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신설 2006.5.15)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개정2006.5.15)

4.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2006.5.15)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2006.5.15)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03. 3. 31 개정 2011.1.10)

③위원은 군의 국장·단장 및 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3. 3. 31)(개정 2008.12.30)(개정2013.5.30)

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6급으로 한다.(개정 1998. 8. 31)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③~(29)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3월 2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3.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14.9.25시행)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4조~6조)

(1)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나. 임원의 해임 요구 등(안 제8조)

-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9조)

(1) 성과계약은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해야 함

(2) 해당연도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

(3) 군수는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를 다음연도 6월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함

라. 지도·감독(안 제11조)

(1)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시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마.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13조)

(1)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5.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9.24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14.9.25시행>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출연기관인 달성문화재단, 달성복지재단, 달성장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4조~제6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 안 제8조에는 임원의 의무와 책임준수에 따른 해임 요구 등에 관하여
- 안 제9조에는 임원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 안 제11조에는 주무부서장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 안 제13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등에 대하여

우리 군이 출연한 각 재단의 건전운영을 위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구체화, 명문화 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써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원안동의/ 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2월24일부터 3월16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군의 부서의 실·과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군의 부서의 실·과장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사람, 다만 군의원은 제외한다.
2.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군의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정관 협의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전 회계연도 성과계약서 상 계약내용의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전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10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1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4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군수는 경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다.

1. 경영평가에 따른 포상 또는 벌칙
2. 경영평가에 따른 예산의 증감
3.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
4.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 권고
5. 그 밖에 위원회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② 군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예산지원, 인사혜택 등에 있어 기관간의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2.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경영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의 지분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 · 경제계 · 언론계 · 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 · 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도 · 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 · 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 · 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 · 출연 기관은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1. 지원금: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나.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다. 가목 및 나목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2. 총 수입액: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총 수입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11.19.>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사항: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4.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5.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사항: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3월 2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법무규제개혁실)

3. 개정이유

○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와 위촉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건제출 및 심사기준을 정하여 내실있는 규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원의 구성, 위촉직 위원의 위촉기준과 임기를 규정(제3조)

나. 위원회 간사의 보직을 규정(제6조)

다. 조례·규칙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제6조의2)

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및 공표하고 이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제6조의3)

5.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5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제23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설된 법무규제개혁실의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사기준을 정비하므로 내실 있는 규제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써

○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 위촉기준 및 임기에 관하여
- 안 제6조에는 위원회 간사의 보직을 직제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 안 제6조의2에는 조례·규칙 제·개정시 사전 심사규정을
- 안 제6조의3에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무규제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구체화, 명문화 코자하는 조례 안으로써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원안통과/ 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2월23일부터 3월15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2인을”을 “위원장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군수가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정책사업단장, 법무규제개혁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달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을 “위원회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 규제개혁업무담당”을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건의 사전 심사) ①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하려는 소관 부서에서는 규제유무, 정도 및 영향 등에 관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제6조의2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의 것인 경우에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제출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한 후,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을 이용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td><td rowspan="2"></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기한
연 장</td><td></td></tr>
<tr><td>3. 소관부서</td><td colspan="9"></td></tr>
<tr><td>4. 근거법령 등</td><td colspan="3"></td><td>관 련
규제수</td><td colspan="5"></td></tr>
<tr><td>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td><td colspan="9">○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td></tr>
<tr><td>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td><td colspan="9"></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제제한 요소 포함 여부
나. 기업활동저해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자체규제심사서

1. 규제사무명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4. 근거법령 등									
5. 심사일시									
6. 심사참여자									
7.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8. 종합심사의견									
9. 심사참여자의 주요이견(요약)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 위원장을 ----------.
②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군수가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정책사업단장, 법무규제개혁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달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밖에 위에 준하는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⑤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 (생략) ②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
<신 설>	**제6조의2(안건의 사전 심사)** ①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하려는 소관 부서에서는 규제의 유무, 정도 및 영향에 관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제6조의2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의 것인 경우에 소관 부서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제출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한 후,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붙임 3)

관계법령

□ 행정규제 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 범위 ·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 · 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규제 기본법 제25조 제5항(구성 등)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99. 1. 7 조례 제1645호
(일부개정) 2002. 1.18 조례 제1787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5.03.11 조례 제190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2.10.30 조례 제2207호
(일부개정) 2013.05.30 조례 제223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규제사항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2012.10.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2.10.30)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2012.10.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단장 및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3.11)(개정2013.5.30)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이 된다. (개정2012.10.30)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2.10.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②~(29)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3월 2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회계과)

3.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시행일자 2015. 1. 1.) 개정의 후속조치

나. 기증품의 취득 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다. 기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관부서에서 기증품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회계과에서 기증품 총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토록 함

라. 오기 정정 및 법령 용어 순화

4. 주요내용

가.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수정

나. 제10조의 제목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서당경비”를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를 “제1항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같은 조제3항 중 “ 관서당경비

"를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수정.

다. 제11조의 제목 "(기증품의 취득)"을 "(기증품의 취득 및 관리)"로, 제11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로 수정

라. 제11조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기증품관리대장과 기증품 총괄관리대장 작성·비치의무를 규정함

마.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3조 중 "청·소"를 "소속기관"으로 수정

5.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67조제2항, 제91조 및 부칙 제20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먼저 본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사항으로는「지방재정법」제91조 <개정 2014.5.28.>(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에 따른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의 임명 또는 위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과 부합 되도록 하고

○ 기증품 취득시 "대구광역시 기증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심의주체를 우리 군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기증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작성·비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군의 행정기구와 법령용어를 순화하여 지방자치에 맞게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2월23일부터 3월16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제28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서당경비”를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를 “제1항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같은 조제3항 중 “ 관서당경비“를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증품의 취득)”을 “(기증품의 취득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품 총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를 ”경우에 한다.“로 하며 ,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각호의 규정에“를 ”각 호에“로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의 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물품출납사무의 겸사)"를 "(물품출납사무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제33조 중 "청·소"를 각각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로 한다.

별표2의 구분 중 "상요전환"을 "사용전환"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물 품 출 납 이 동 부 의 정 리 구 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 용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 도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 유 재 산 편 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 실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 받는 경우
관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 연 감 모	자연 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 리 전 환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 류 전 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 용 전 환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공 차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 상 양 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기 증 품 관 리 대 장

관리 번호	기증 품명	종류	기증자		기증일	추정가격	보관장소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관리번호 부여방법: 주관부서-기증순서
【예시】회계과-1 , 기획감사실-13

※ 종류: 기증품의 통상적 구분에 의함
【예시】서양화, 서예, 동양화, 조형물, 컴퓨터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 증 품 총 괄 관 리 대 장

관리 번호	주관부서	기증품명	종류	기증자		기증일	추정가격	보관장소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관리번호는 주관부서의 관리번호와 동일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 ③(생 략)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 ③(현행과 같음) ④_____ 제3항에 따른 _____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_____ 재무관_____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 실·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_____ 제8조에 따라 _____ 제58조에 따라 _____ ②재무관_____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_____ 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본청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및 관리) ①_____ _____ _____ _____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_____ _____.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_____ _____ _____ 따라 _____ _____.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___ 제3항에 따라 _____ _____ _____ _____ ___.
<신 설>	⑤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의 기증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⑥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의 기증품 총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_____ 각 호의 어느 하나에 _____ _____ 따라 _____ _____ _____.

현 행	개 정 안
1. ~ 8.(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1. ~ 8.(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________________ ______ 각 호의 어느 하나에 ____ ______________________. 1. ~ 5.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경우에 한다. ④제1항에 따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제3항에 따른______________.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생 략)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의 장부가격 총액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각 호의 어느 하나에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③(현행과 같음) ④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 각 호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항에 따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현 행	개 정 안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따라 ____.
⑥(생 략)	⑥(현행과 같음)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재무관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⑧(생 략)	⑧(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생 략)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________________.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생 략)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현행과 같음)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2.________________ ________ 따른다.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________ ________________ 따라 ______ ________________.
1. ~ 4.(생 략)	1. ~ 4.(현행과 같음)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____________ 제1항에 따른 ____ ________________, 제11조의 2에 따른 ________________.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③제1항에 따른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④제1항에 따라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제25조(장부의 작성)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 포함)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__ 제90조에 따른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소속기관 ____________ 소속기관 ______ 소속기관 ______________. ②제1항에도 __________________ 소속기관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생 략)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을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현행과 같음) ②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재무관__ ________________________.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생 략)	제29조(물품검사서) ①_____ __ 제28조제1항에 따라 _____ _____ 서식에 따른 _____ _____ _____ 소속기관 ___ _____. ② ~ ③(현행과 같음)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___ _____ _____ _____.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_____ _____ _____ 소속기관 _____ ___ <삭 제> _____.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부칙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2014.5.28.>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정) 1988. 5. 21 조례 제1164호
(일부개정) 1989. 2. 2 조례 제1241호
(일부개정) 1990. 5. 15 조례 제1356호
(일부개정) 1994. 11. 30 조례 제1511호
(일부개정) 2001. 3. 19 조례 제1757호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2. 1. 18 조례 제1787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3. 7. 1 조례 제1818호
(일부개정) 2006. 5. 15 조례 제 1940호
(일부개정) 2008.12.30 조례 제205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08.01 조례 제215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5.30 조례 제223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2006.5.15)(개정 2008.12.30, 개정 2011.8.1, 개정2013.5.30)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6.5.15)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2006.5.15)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2006.5.15)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별표 2】에 의한다.

제7조(년도 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 실·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2006.5.15, 개정 2008.12.30, 개정 2011.8.1, 개정2013.5.30)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 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본청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본청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06.5.15]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2006.5.15)

제 2 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의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뚜렷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년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

1.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그 부속품

4.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기타 내구 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개정 2003. 7. 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매수인이 없을 때

3.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매각총량

2.2이상 물품의 총량

3.동일물품의 총량

4.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의 장부가격 총액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 3 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06.5.15)

②삭제(2006.5.15)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청 · 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2006.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2006.5.15)

제22조(물품의 망실 훼손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2006.5.15)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6.5.15)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6.5.15)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6.5.15)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물품카드 등록부

4.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

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2006.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2006.5.15)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겸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 포함)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2006.5.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청·소장의 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을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2006.5.15)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⑩~(29)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3월 2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공원녹지과)

3. 개정이유

○ 현실적인 휴양림 시설사용료 조정 및 규제개혁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시설사용료 조정

나. 달성군민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시설사용료 수립

다. 휴양림 신축 및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 수립

라. 규제개혁 및 법령용어 순화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 개정

5.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 6조(시설사용료) 제1항【별표1】에서 규정한 비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2010. 3.10 개정이후 지금까지 동결되어 타 지역 휴양림의 시설·면적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하며, 최근 증·개축 및 리모델링으로 이용요금의 재 책정이 필요한 상태이고

○ 군민을 위한 편의 시설이 지역주민에게는 할인혜택이 없어 우리 군민이 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법령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원안통과/ 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2월17일부터 3월10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2항 중 “용리 산 1번지 외 9필지“를 ”휴양림길 232“로 하고, ”본리리 산 129번지 외 1필지“를 ”화원휴양림길 126“으로 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달성군이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직접사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부득이 휴양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제5호 및 같은 조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애완동물(개·고양이 등)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
8.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달성군이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비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제6조 관련) (단 위 : 원)

구 분			사용시간	요 금		비 고
명칭		크기		주 중	주말, 성수기	
숲속의 집	· 통나무집 (구건물)	5인용(27㎡)	1동/1일	50,000 (군민40,000)	70,000 (군민60,000)	※주중 : 월~목 ※주말 : 금·토·일, 공휴일 전일 및 당일 ※성수기 : 7~8월 ※사용시간 : 15:00 ~ 다음날 12:00(오전) ※달성군민 사용료 일부감면
	· 통나무집 (신건물)	5인용(29㎡)		60,000 (군민50,000)	90,000 (군민70,000)	
	· 통나무집 (신건물)	11인용(67㎡)		120,000 (군민110,000)	180,000 (군민160,000)	
산림문화 휴양관	· 콘도	5인용(30㎡)	1동/1일	60,000 (군민50,000)	90,000 (군민70,000)	
		10인용(60㎡)		110,000 (군민100,000)	160,000 (군민140,000)	
	· 청소년 수련관 (신건물)	4인용(21㎡)		50,000 (군민40,000)	70,000 (군민60,000)	
		19인용(96㎡)		140,000 (군민110,000)	200,000 (군민160,000)	
야영장	· 데 크		1조/1박	10,000		※야영장은 7~8월만 운영
	· 바 닥			5,000		
세미나실	· 2층(196㎡/120인용)		1회	150,000	200,000	※ 사용요금은 1회 4시간 기준임 (추가사용의 경우 : 1시간당 20,000추가-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객실 3개이상 예약시 사용료 20% 감면
기타	· 야외공연장		1회	20,000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제6조 관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rowspan="2">사용
시간</th><th colspan="2">요 금</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명칭</th><th>크기</th><th>주 중</th><th>주말, 성수기</th></tr>
<tr><td rowspan="2">산림문화
휴양관</td><td>5인용(29㎡)</td><td rowspan="5">1동/1일</td><td>60,000
(군민50,000)</td><td>90,000
(군민70,000)</td><td rowspan="5">※주중 : 월~목
※주말 : 금·토·일, 공휴일
전일 및 당일
※성수기 : 7~8월
※사용시간 : 15:00 ~
다음날 12:00(오전)
※달성군민 사용료 일부감면</td></tr>
<tr><td>19인용(101㎡)
(신건물)</td><td>170,000
(군민130,000)</td><td>240,000
(군민190,000)</td></tr>
<tr><td rowspan="2">숲속의
집</td><td>9인용(50㎡)</td><td>100,000
(군민80,000)</td><td>140,000
(군민120,000)</td></tr>
<tr><td>12인용(68㎡)</td><td>130,000
(군민110,000)</td><td>180,000
(군민160,000)</td></tr>
<tr><td rowspan="2">야
영
장</td><td>·데 크</td><td rowspan="2">1조/1박</td><td colspan="2">10,000</td><td rowspan="2">※야영장은 7~8월만 운영</td></tr>
<tr><td>·바 닥</td><td colspan="2">5,000</td></tr>
</table>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한다)시설사용료의 징수와「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7조에 따른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 그 밖에 ----------.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의 공유림과 사유림에 조성된 휴양림과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생 략) ②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 1번지 외 9필지 일원으로 하고, 화원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산 129번지 외 1필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휴양림길 232 ---------- 화원휴양림길 126---.
제4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등) (생략)	제4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등)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 ·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달성군이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직접사용하려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부득이 휴양림 관리 ·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생 략)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애완동물(개·고양이 등)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8.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시설사용료) ① (생 략)	제6조(시설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1. 달성군이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제8조 (손해배상) ① ~ ② (생 략)	제8조 (손해배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제9조 (이용자 행위제한 등의 게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행위제한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 행위제한 등의 게시) 제5조에 따른 ---------- 제6조에 따른 ----------.
제11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의 위탁관리) ---------- ----------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

현 행

【별표1】 비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제6조 관련) (단 위 : 원)

구 분		사용시간	요 금				비 고
			주 중 (월~목)	주 말 (금·토·일 공휴일전일 및 당일)	성수기 (7~8월)	비숙박 (12시~18시)	
숲속의 집	·4~6인용 (21㎡)	1동/1일	40,000	60,000	60,000	30,000	※사용시간 : 14:00~다음날정오
	·8인용(30㎡)		50,000	70,000	70,000	35,000	
	·16인용(60㎡)		100,000	140,000	140,000	70,000	
청소년 수련장	·1층(33㎡/15인용)	1동/1일	70,000	100,000	100,000	50,000	
	·2층(83㎡/30인용)		120,000	170,000	170,000	85,000	
	·전체(1,2층)		170,000	250,000	250,000	125,000	
야영장	·텐트장	1조/1박	-	-	3,000	-	※ 1박할 경우 요금부과 (주간 사용 시 무료)
	·데 크		-	-	10,000	-	
세미나실	·2층(196㎡/120인용)	1회	150,000	200,000	-	-	※ 사용요금은 1회 4시간 기준임 (추가사용의 경우 : 1시간당 20,000 추가-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청소년 수련장 전체 또는 객실 3개이상 예약 시 사용료 20%감면
기타	·야외공연장	1회	20,000				※캠프파이어장은 청소년수련장 이용객에 한하여 사용 단, 땔감은 사용자 구입
	·캠프파이어장		무 료				

개 정 안

【별표1】 비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제6조 관련) (단 위 : 원)

구 분			사용시간	요 금		비 고
명칭		크기		주 중	주말, 성수기	
숲속의 집	· 통나무집 (구건물)	5인용(27㎡)	1동/1일	50,000 (군민40,000)	70,000 (군민60,000)	※주중 : 월~목 ※주말 : 금·토·일, 공휴일 전일 및 당일 ※성수기 : 7~8월 ※사용시간 : 15:00 ~ 다음날 12:00(오전) ※달성군민 사용료 일부감면
	· 통나무집 (신건물)	5인용(29㎡)		60,000 (군민50,000)	90,000 (군민70,000)	
	· 통나무집 (신건물)	11인용(67㎡)		120,000 (군민110,000)	180,000 (군민160,000)	
산림문화휴양관	· 콘도	5인용(30㎡)	1동/1일	60,000 (군민50,000)	90,000 (군민70,000)	
		10인용(60㎡)		110,000 (군민100,000)	160,000 (군민140,000)	
	· 청소년 수련관 (신건물)	4인용(21㎡)		50,000 (군민40,000)	70,000 (군민60,000)	
		19인용(96㎡)		140,000 (군민110,000)	200,000 (군민160,000)	
야영장	· 데 크		1조/1박	10,000		※야영장은 7~8월만 운영
	· 바 닥			5,000		
세미나실	· 2층(196㎡/120인용)		1회	150,000	200,000	※ 사용요금은 1회 4시간 기준임 (추가사용의 경우 : 1시간당 20,000추가-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객실 3개이상 예약시 사용료 20% 감면
기타	· 야외공연장		1회	20,000		

현 행

【별표1】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제6조 관련)

구 분		사용시간	요 금				비 고
			주 중 (월~목)	주 말 (금·토·일 공휴일전일 및 당일)	성수기 (7~8월)	비숙박 (12시~18시)	
숲속의집	·5~8인용 (29㎡)	1동/1일	50,000	75,000	75,000	40,000	※사용시간 : 14:00~다음날정오
	·13인용(50㎡)		80,000	120,000	120,000	55,000	
	·18인용(68㎡)		110,000	160,000	160,000	80,000	
야영장	·텐트장	1조/1박	-	-	3,000	-	※ 1박할 경우 요금부과 (주간 사용 시 무료)
	·데 크		-	-	10,000	-	

개 정 안

【별표1】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제6조 관련)

구 분		사용시간	요 금		비 고
명칭	크기		주 중	주말, 성수기	
산림문화휴양관	5인용(29㎡)	1동/1일	60,000 (군민50,000)	90,000 (군민70,000)	※주중 : 월~목 ※주말 : 금·토·일, 공휴일 전일 및 당일 ※성수기 : 7~8월 ※사용시간 : 15:00 ~ 다음날 12:00(오전) ※달성군민 사용료 일부감면
	19인용(101㎡) (신건물)		170,000 (군민130,000)	240,000 (군민190,000)	
숲속의집	9인용(50㎡)		100,000 (군민80,000)	140,000 (군민120,000)	
	12인용(68㎡)		130,000 (군민110,000)	180,000 (군민160,000)	
야영장	·데 크	1조/1박	10,000		※야영장은 7~8월만 운영
	·바 닥		5,000		

붙임 3)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시설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전문개정) 2007.04.20 조례 제1980호
(일부개정) 2008.07.30 조례 제2035호
(일부개정) 2010.03.10 조례 제21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의 공유림과 사유림에 조성된 휴양림과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화원 자연휴양림으로 한다.(개정2010.3.10)

②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 1번지 외 9필지 일원으로 하고, 화원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산 129번지 외 1필지 일원으로 한다.(개정2010.3.10)

제4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1. 휴양림 개 · 보수 시
2.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휴양림 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 ·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확성기 사용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위험물 및 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4. 임지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의 굴취, 채취 및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행위
5. 개 ·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6. 불법 상행위를 하는 행위
7.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출입행위
8. 그 밖에 휴양림 관리 ·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시설사용료) ① 군수는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1] 의 시설사용료를 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1.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7조(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 ①시설사용 예약은 예금주 통장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휴양림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 7. 30)

제8조(손해배상) ①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자 행위제한 등의 게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행위제한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처리) 휴양림의 운영 수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1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3.10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3월 2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보건과)

3.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금연 지도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

나. 금연지도원 임기와 해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와 활동수당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5.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 4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가 2014. 1.28 [본조신설]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조항신설<2014.7.28>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절차와 임기 및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와 활동수당 등을 규정하여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므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영향평가결과 :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관련서식에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에 대한 개선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안 제12조(임기)에서 금연지도원이 장기간 재직시 유착관계 형성 등 부패소지 발생 우려에 대한 의견제시를 받았으나

- 업무 특성상 채용 및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고 금연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하여 성별/부패영향 평가를 반영하지 않았고

○ 규제심사결과 : 원안통과/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2월23일부터 3월16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을 ”제5조제2항을“로 한다.

제2장(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금연지도원

제11조(위촉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2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

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5조(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1, 2, 3, 4, 5, 6, 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생 략)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5조제2항을 -------.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제8조(과태료) ① ---------- 법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장 금연지도원
<신 설>	제11조(위촉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신 설>	제12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

현 행	개 정 안
	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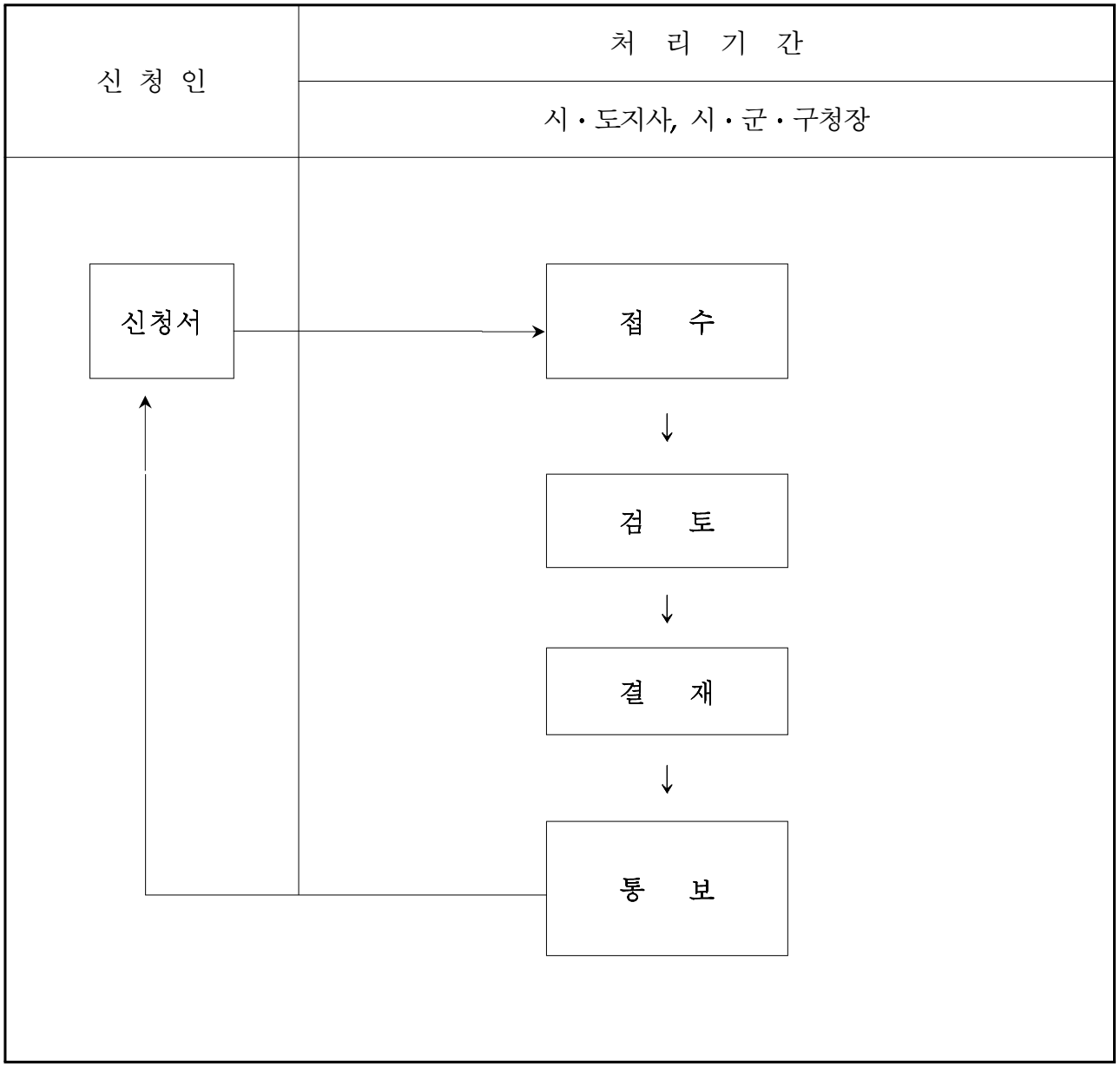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성별	남,여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4.11.20>]

[별표 1의2] <개정 2014.11.20>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제16조의4제3항 관련)

직 무	직 무 범 위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상태 확인 업무 지원 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나.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 다.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라. 흡연실의 표지 부착 상태 마.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 상태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홍보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나.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가.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다. 금연시설 점유자·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교육 지원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2012.12.31 조례 제22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흡연 할 수 없도록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다른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2. 군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3.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 ①군수는 흡연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220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